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
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문의가능 전화번호 : 02-2004-0065/6955-1004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삼성KODEX코리아밸류업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나. 집합투자기구 분류: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다. 보관·관리기간: 2024. 11. 01 - 2024. 12. 31
라.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
마.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한국투자증권, 대
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메
리츠증권 등

2.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 일자	변경사유	주요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2024. 12.06	운용보수 인하 제36조(투자신탁보수)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29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01

* 자세한 변경사항은 <http://dart.fss.or.kr> 을 통해
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사항 없음

6. 회계감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전				변경일	변경후			
회계 감사 인명	계약 기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회계 감사 인명	계약 기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대주 회계법인	1년	49만 5천원	서면 계약	-	-	-	-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
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
의 여부
- 부합함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함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공정함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
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적정함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신규약 또
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일치함

☐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
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
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

☐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